

3. 언론중재제도에서 인격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의 조정 방안

가. 인격권 침해 사례의 확대

다양한 매체의 등장과 언론소비자의 의식제고로 ‘인격권’ 문제가 급격히 부각되고 있다. 인격권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권리들을 의미한다.

언론으로부터 인격권을 침해받았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길은 법률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정정이나 반론,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하고, 승소하였을 때 공표청구 등을 하며 마지막으로 재산적 손해나 정신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이 있다.

언론기본법이 제정된 1981년부터 2005년 언론중재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이 기간에 신청된 사건은 거의 전부가 명예훼손(신용훼손 포함)사건으로 정정 또는 반론보도 신청이 주 내용이었다. 그러나 2005년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청구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명예권(신용권), 초상권, 성명권, 음성권,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조정 및 중재신청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2007년에는 전체 건수의 10%를 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언론중재제도가 가지고 있는 신속성, 그리고 지금까지의 높은 피해구제율로 인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인격권은 어느 범위까지 해당되는가에 대해 논한 뒤, 실제 사례를 검토해보기로 하자.¹⁰⁾

(1) 인격권의 개념 및 보호범위

언론중재법 제5조 제1항은 인격권을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

10) 김동하(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서울 제4중재부장), “인격권 보호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의 손해배상제도-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한하여”, 언론중재위원회, 2007. 9. 6.에서 인용함.

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인격권은 헌법에서 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조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조항,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존중 조항, 언론중재법과 민법 기타 앞서 본 실정법들 규정에 근거하여 인정되고 있다. 이 인격권의 주체는 태아로부터 사망하기까지의 자연인은 인격권을 가지며, 생명·자유·신체·건강·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음성·대화에 관한 인격권, 정조에 관한 인격권, 자기운명결정권의 경우 자연인만이 주체가 될 수 있으나 명예, 초상, 성명, 저작물 및 사적문서에 관한 인격권, 자기정보통제관리권, 학문과 예술에 관한 권리, 퍼블리시티권 등의 경우 법인, 조합, 단체까지 주체가 될 수 있다.

한편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않고 언론사가 이니셜이나 음성변조로 언론피해자의 특징을 피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보도의 구체적인 표현내용이나 자료화면 등 주위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일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의 보도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거나, 수사기관이나 청문회에 출두하면서 스스로 포즈를 취하거나 TV카메라 앞에서 친근하게 웃는다면 묵시적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법성 조각사유가 된다. 그러나 승낙 당시의 예상과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프라이버시를 공개할 경우는 위법에 해당한다. 또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언론의 보도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공적인 관심사 또는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있거나 그 보도가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프라이버시권이 어느 정도 침해해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악의적인 보도나 초상권의 상업적 이용,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의 보도는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2) 명예권의 개념 및 보호범위

명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내부적 가치 그 자체를 말하는 내적 명예,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그의 도덕적·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외적 명예,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내지 감정을 말하는 명예 감정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 즉 외적 명예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명예가 훼손되려면 사실에 대한 적시가 되어야 하는데 라디오 및 TV에 의한 뉴스보도, 드라마, 다큐멘터리, 연예오락물 등, 일간·주간·월간지에 의한 스트레이트 기사, 인터뷰·논평·비평·사설·가십기사, 풍자·만평·독자투고·폭로·광고 등에 의한 경우,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인터뷰를 한 것처럼 보도되거나, 인터뷰의 조건이 무시된 보도 등을 들 수 있다. 또 '사실의 적시'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도 명예훼손이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초상권의 개념 및 보호범위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관하여 가지는 모든 인격적, 재산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 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영리적으로 사용된 경우 그 대가를 구할 수 있는 권리(초상영리권)를 말한다. 초상에는 사진, 동영상, 컴퓨터 합성 화면, 목탄 스케치로 작성한 인물화, 몽타주, 소묘, 풍자만화, 인형, 일러스트레이션, 커리커처 등 제한이 없다.

촬영거절권은 본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촬영하는 것으로 초상권 침해가 되지만 공원, 스포츠 경기장, 시위 현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는 본인이 촬영을 의식하고 거절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은 초상이 부수물로 나타나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않으나 그 부분을 확대하여 배포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가 된다.

공표거절권은 본인의 동의없이 부정적인 보도와 함께 초상이 보도되는 경우 침해가 된다. 따라서 촬영에 본인의 승낙을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공표에 대한 승낙을 받아 놓아야 한다. 공표에 대한 승낙은 있었으나 본인의 예상과 다른 방법과 목적으로 공개

되는 것은 초상권 침해가 되므로 공표 자체뿐만 아니라 공표의 방법·목적에 대한 승낙도 반드시 필요하다.

초상영리권은 초상이 무단으로 영리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그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때 초상권이 퍼블리셔티권과 동일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초상영리권은 주로 일반인들이 갖는 인격권의 개념이나 퍼블리셔티권은 주로 유명인이 갖고 있는 재산권으로 침해시 위자료보다는 모델료 청구가 주된 관심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프라이버시권의 개념 및 보호범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언론중재법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초상권, 성명권 등 개별적인 인격권과 동격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프라이버시권으로 볼 수 있다. 프라이버시권은 타인에 의해서 관찰되지 않고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자기의 비밀을 간직할 수 있으며, 사생활의 비밀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않고 침해받지 않으며, 나아가 적극적으로 자기에 관한 정보의 유통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는 개인의 남녀관계, 가족관계, 학력 및 사회적 경력, 결혼 및 이혼 경력, 병력이나 신체 및 정신상의 결함, 재산관계, 사상이나 정치적 신조, 민·형사 사건에 관련된 정보 등이 해당된다.

공중이 오해하도록 하는 공표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도 가능하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명예훼손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개인에 관한 사항을 잘못 공표하여 공중으로 하여금 그 개인에 대한 그릇된 인상을 가지게 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의 범리가 아닌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해석할 수 있다.

(5) 퍼블리셔티권의 개념과 보호범위

대중매체의 발달로 연예인, 스포츠 선수, 정치인, 예술가 등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성명, 초상, 기타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인격적 요소가 본인의 승낙없이 또는 계약범위를 넘어 광고나 달력, 카드 등 물품에 사용되는 경우 생기는 침해를 말한다. 언론에서도 이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격권 차원에서 논의되

고 있다. 이는 재산권으로서 경제적 가치에 비중을 둔 것으로 그 권리를 양수한 타인도 보호 받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부터 이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침해의 유형으로는 허락없이 타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는 경우, 그 모습이 새겨진 상품이나 기념품을 판매하는 경우, 특정 공간이나 물품에 타인의 성명을 붙이는 경우에 해당한다. 퍼블리시티권은 재산상의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손해배상의 방법 및 종류

(1) 손해배상의 방법

손해배상이란 위법(違法)적인 행위에 의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보전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을 말한다. 언론에서도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므로 피해자는 인격권 침해가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침해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과정을 거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배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로는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실제 조정결과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2) 손해배상의 종류

손해배상에는 재산상 손해배상, 정신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다.

재산상 손해배상은 언론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당해 영업이 부진해졌거나 파산, 계약의 취소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신적 손해배상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말하는 것이다. 위자료의 산정은 판례를 볼 때 기사의 내용과 크기, 피해자 측의 나이·성별·재산정도, 언론사 측의 발행부수·공신력 등에 의해 기준이 정해진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고의 불법행위에 악의, 의도적 무시, 고의성 있는 경우 장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

(3) 손해배상 신청액의 비교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재판을 통하는 방법과 2005년 이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는 방법으로 이원화됐다. 두 청구방법은 두 가지 차이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결정의 시간적 범위가 다르다는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처리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3주 이내에 조정 및 중재를 결정하는 초스피드 결정방식이지만 재판은 비교적 긴 시간을 요구한다는 점이 다르다.

둘째, 입증자료의 범위가 다르고 이에 따라 결정액도 다르다는 점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손해배상 말고도 정정 또는 반론, 추후보도가 함께 수반되는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자료만을 입증의 근거로 삼고 결정액도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다.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직권조정결정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자동적으로 법정소액이 제기된다. 이런 경우 재판의 일차적 여과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재판은 침해의 경중을 결정하는 마지막 과정이기 때문에 원고 또는 피고 양쪽 모두 많은 자료를 제시하며 입증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범위가 다르고 결정액 역시 고액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김동하 부장판사가 법원의 판례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결과 사례를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명예훼손의 경우 법원 판례는 1천만원 이하는 22.6%에 불과하고 1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은 59.7%가 몰려있는 반면 언론중재위원회의 손해배상조정액은 1천만원 이하가 8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초상권 침해와 프라이버시권 침해, 음성권 침해 역시 언론중재위에서는 1천만원 이하에 100% 조정되고 있는 반면, 판례에서는 초상권의 경우 1천만원 이하가 71.4%, 1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이 28.6%를 차지하고 있고, 프라이버시권은 1천만원 이상이 70%를 차지하고 있어 크게 비교가 되고 있다.

(4) 손해배상 신청내용의 비교분석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언론침해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이를테면 미니 스커트를 입은 뒷모습을 찍은 사진의 경우에도 소액이지만 손해배상이 이루어졌고, 벗꽃 구경을 하는 회사직원들의 모습을 연인관계로 오인하게 끄 했다는 이유로 조정신청된 경우도 있다.

명예훼손과 관련한 판례와 조정 내용, 그리고 액수를 정리한 것이 <표6>이다. 표의 손해배상액수를 비교하기 위해 맨 왼쪽 칸에는 단계별 손해배상액수를, 중간에는 법원 판례의 내용과 액수를, 오른쪽 칸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심의 내용과 조정액을 기록했다. 이밖에 <표7>은 초상권 침해 관련, <표8>는 프라이버시권 침해 관련, <표9>는 음성권 침해와 신용훼손을 함께 정리한 것이다. 물론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인이 청구한 액수는 명예훼손의 경우 300만원에서 7억 5,000만원, 초상권 침해의 경우는 100만원에서 2억원, 프라이버시 침해는 500만원에서 1억원, 음성권 침해는 100만원에서 3,000만원, 신용훼손은 500만원에서 2,000만원이었으나 실제로 조정은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이루어졌다.

<표6> 명예훼손과 관련한 판례와 조정 내용 및 손해배상액

| 금 액 | 법 원 | | 언론중재위원회 | |
|-----------------|-----|---------|---------|---|
| | 건수 | 사례 및 액수 | 건수 | 사례 및 액수 |
| 50만원 ~2백만원미만 | 1 | | 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구장 가스폭발로 공덕동 재래 시장 화재발생(50만원, 100만원) - 청학동 무허가 사당 난립 관련 인터뷰(100만원) - 아내가 산후우울증으로 자살 단 정보도(100만원) - 아파트에 숨진 아버지 3일간 방치(반론 및 100만원, 100만원) - 지하철에서 말다툼 동영상 불리하게 편집(기사 삭제 및 150만원) - 호화주택에서 사치생활하는 양 부정적으로 방영(150만원) |

| 금 액 | 법 원 | | 언론중재위원회 | |
|---------------------|-----|---|---------|--|
| | 건수 | 사례 및 액수 | 건수 | 사례 및 액수 |
| 2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 2 | | 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명 대학출신자 아르바이트직 전전 월세 내기도 벅차다고 보도(200만원) - 4년 전 여성잡지 기고문을 최근 호에 무단전재, 직접 기고한 양 보도(알림 및 200만원) - 강도짓 보도, 검찰 무혐의 처분 받음(200만원) - 수사경찰제 원칙이 무시되고 있는 당사자인 양 보도(300만원) - 빛 독촉 친동생 엽기살해 보도 후 무죄판결(후속보도 및 사건 별로 150만 - 550만원까지 5건) |
| 500만원이상 ~1천만원미만 | 14 | |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제 여성에게 임신, 유산 요구 폭행했다고 허위 보도(정정 및 500만원) |
| 1천만원이상 ~2천만원미만 | 15 | |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산시 공무원들이 특혜행정 허위보도(1,000만원) - 대구지방국세청 직원들이 세무 조사 중 포스코 직원들과 식사 하며 심하게 다뤘다고 허위보도(정정 및 1,500만원) - 부모로부터 숙제 안했다고 꾸지람 듣고 자살했다고 허위보도(정정 및 1,500만원) |
| 2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 2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영수 여사 살해범은 청와대 경호과장(2,500만원) - 뉴스위크 주간잡지 초상권 침해(3,000만원) - 김일성 장례식 참석한 000(3,000만원) - 김해군 부면장 창고 불법임대(3,000만원) - 000의 호화사교클럽 물의(3,000만원) - 000이 김형욱에게 야부(3,000만원) - 변태 성행위 연극(3,000만원) - 000검사 이씨 비망록 은폐(3,000만원) | | |

| 금 액 | 법 원 | | 언론중재위원회 | |
|-------------------|-----|---|---------|---------|
| | 건수 | 사례 및 액수 | 건수 | 사례 및 액수 |
| 2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 1 | - 국사모, 국정원자료 정형근에 제공(3,000만원) - 박지원, 김재기로부터 2억 수령(3,000만원) 등 | | |
|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 7 | - 임채정은 중정 출신(5,000만원) - 이종찬 운동원 조폭 일원(5,000만원) - 화가 작품 오리지널 판화로 속여 전시(5,000만원) - 현승중은 친일파(5,000만원) - 000 20세 연하 여동생 딸 소문(6,000만원) - 000 사례비 보도(뉴스데스크 4,000만원 + PD수첩 3,000만원)(7,000만원) - 중학교장 집단 괴롭힘 방치(7,900만원) | | |
| 1억원이상 | 4 | - 000검사 납득못할 영장기각(1억만원) - 백지연 이혼배경(1억만원) - DJ는 용공 친북인사(초상권침해 포함)(1억 2,000만원) - 한약업자, 김현철에게 정치자금 전달(4억원) | | |

〈표7〉 초상권 침해와 관련한 판례와 조정 내용 및 손해배상액

| 금 액 | 법 원 | | 언론중재위원회 | |
|-----------------|-----|---------|---------|--|
| | 건수 | 사례 및 액수 | 건수 | 사례 및 액수 |
| 50만원 ~2백만원미만 | | | 24 | - 추위로 움크리고 있는 모습(30만원 중재) - 재테크 모임 소개 시 실명 및 사진(30만원) - 인터넷 해지 업무 무관 직원 방영(49만원) - 이직 기사에 서점서 책고르는 모습(50만원) |

| 금 액 | 법 원 | | 언론중재위원회 | |
|---------------------|-----|--|---------|--|
| | 건수 | 사례 및 액수 | 건수 | 사례 및 액수 |
| 50만원 ~2백만원미만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의노출 달리는 모습(50만원, 무료구독 1년) - 단역 배우 프로필 사진을 드라마 소품으로 사용(60만원) - 쇼핑요령 보도시 홈페이지 사진 무단 게재(60만원, PR기사) - 댄스대회 과다노출 춤 장면(70만원) - 살인 피해자 가족 우는 모습(80만원) - 미니스커트 부정적 기사에 사진(90만원, 해당 신문 평생무료구독, 자매 월간지 1년 무료구독) - 미니스커트 차림 걷는 모습(약 100만원 내외 현물 지급) - 대학축제 편치왕 주먹 휘두르는 모습(100만원) - 옷차림 부정적 기사 뒷모습(현물 지급) - 음료수 마시며 걷는 모습, -인터뷰 회피자 촬영 및 방영, 뇌졸중 기사에 얼굴 사진, -서해대교 사고 피해자 모습 및 음성 방영, -프로포즈 받고 우는 모습, -누드크로키 모델 사진 게재(이상 100만원) - 산 오르는 모습(100만원 중재) - 옷가게에서 커피 쏟는 장면(115만원) - 동료와 벚꽃 길 걷는 모습(150만원) - 가출 청소년과 모친 상면 장면(150만원 중재) - 생선 절도 초상 및 음성 보도(150만원) |
| 2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주차량 체포 및 인터뷰 장면, 동의범위 넘어 사용(200만원) - 연주자들 식별 불가 조건 위반(200만원) | 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드컵 경기장에서 응원모습, -주정차 단속요원 폭행자 초상과 차량 번호판 사진 게재, -성폭행 피해자 CC-TV모습 방영, -납치피해자 CC-TV 모습 방영하고 성폭행 당했다고 보도, -동물사육 부 |

| 금 액 | 법 원 | | 언론중재위원회 | |
|---------------------|-----|---|---------|---|
| | 건수 | 사례 및 액수 | 건수 | 사례 및 액수 |
| 2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 기사에 애완동물 가게 운영자 사진, -장애인 복지시설 비리 척결대회 무산 보도 시 시설 근무자 사진 게재(200만원) -이혼 위기 넘긴 노부부 사연 소개시 사진 방영 및 불륜 당사자로 묘사(250만원 중재) -성전환 수술 전후 사진 소개(280만원) -구의원 실종사건과 무관한 자의 얼굴과 유세차량 방영(300만원) |
| 500만원이상 ~1천만원미만 |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수경 결혼식 장면(500만원) -상부한 시집 발행인의 방영내용을 보험회사 직원교육용으로 판매(500만원) -한혜숙 사진을 월간지 광고에 사용(800만원) | 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정차 단속요원 폭행자 초상과 차량 번호판 사진 게재(200만원, 700만원) -현상범 포스터에 사진 실고 강간 미수범으로 방영(500만원) -'된장녀' 기사에 초상, 성명 공개(500만원, 700만원 중재)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자모습 방영(500만원) -나뭇가지로 두개골 골절상 피해자가 승소한 사연 소개하면서 사진과 실명 공개(700만원) |
| 1천만원이상 ~2천만원미만 |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압구정동 오렌지족 사진(1,000만원) -앵커출신 중견 방송인 000의 음주단속 현장(음성권 침해 포함)(1,500만원) | | |

〈표8〉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관련한 판례와 조정 내용 및 손해배상액

| 금 액 | 법 원 | | 언론중재위원회 | |
|-----------------|-----|---------|---------|---|
| | 건수 | 사례 및 액수 | 건수 | 사례 및 액수 |
| 50만원 ~2백만원미만 | | |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행 피해자 신원공개(70만원 중재) |

| 금 액 | 법 원 | | 언론중재위원회 | |
|---------------------|-----|---|---------|--|
| | 건수 | 사례 및 액수 | 건수 | 사례 및 액수 |
| 50만원 ~2백만원미만 | | | | -비만도 조사 모델에 응한 자를 비만체형 독자모델로 소개하여 비만정도 공개(100만원) -전국에서 가장 싼 집으로 보도 (150만원) |
| 2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 | | 4 | -현재 거주지 노출(200만원) -성폭행 피해자 나이·성 보도 (100만-300만원) -탈런트와의 사생활 보도시 인적 사항 공개(300만원) -방송 출연자 과거 사생활 노출 (300만원 중재) |
| 500만원이상 ~1천만원미만 | 3 | -0000이 여자 탈런트와 열애 중 (명예훼손 및 500만원) -장인이 사위와 딸 혼인신고하여 그들 신세 망쳤다(명예훼손 및 500만원) -신입생 환영식 촬영(초상권 및 600만원) | 1 | -자궁내막증 수술 장면 및 음성 변조 없이 방영(750만원 중재) |
| 1천만원이상 ~2천만원미만 | 4 | -의사에 반해 이혼을 주 내용으로 한 기사(1,000만원) -변호사 상대 승소과정 수기(명예 훼손 및 1,000만원) -유방수술 후유증 피해자 옆모습 방영(초상권 및 1,000만원) -고객과외 여전 관련 연습실 촬영 (초상권 및 1,000만원) | | |
| 2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 | 2 | -미스코리아 출신 미혼 여성이 전 경환과 부도덕한 관계(2,000만원) -전지현 소속 회사 대표와 결혼 예정(3,000만원) | | |
|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 1 | -백지연 대 최 OO 기자(명예훼손 및 1억원) | | |

〈표9〉 기타 음성권 침해와 신용훼손과 관련한 판례와 조정 내용 및 손해배상액

| 금 액 | 법 원 | | 언론중재위원회 | |
|----------------------|-----|---------|---------|--|
| | 건수 | 사례 및 액수 | 건수 | 사례 및 액수 |
| 50만원 ~2백만원미만 | | | 6 | 〈음성권 침해〉 -성범죄자 신상공개 논란과 관련 전자 팔찌 반대한 2005년 인터뷰 내용을 방송 -대학교 단과대 학생회장이 총학생회장 탄핵에 찬성한다고 보도하고 음성 방송 -주유소 유사 휘발유 판매 관련 인터뷰내용 방송 -퀵서비스 업체 임금 체불 보도 시 회사 직원의 음성 방송 -어린이 유괴사건 취재시 범인의 아파트 상가 부동산 중개업자의 음성과 사무실 내부를 촬영 및 방송(이상 100만원) -프랑스마을 영아 사체 유기 사건 보도시 용의자의 회사 동료의 음성을 변조없이 방송(100만원, 100만원 중재) |
| 2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 | | 3 | -신분증 위조사건 보도시 음성변조 없이 방영(200만원) 〈신용훼손〉 -퀵서비스 업체 임금 체불 보도 시 회사 상호 노출(250만원) -이동통신 대리점 횡포 보도시 대리점 전경보도(정정 및 300만원) |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 | | |
| 1천만원이상 ~2천만원 미만 | | | 1 | -남녀 치정관계 보도시 무관한 피아노학원 전경 방영(1,000만원) |

다. 언론중재제도의 장점과 단점

지금까지의 내용에 의해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언론중재제도의 단점과 장점을 종합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언론중재위의 조정을 통한 손해배상은 그 액수가 재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 신청인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 ② 명예훼손으로 인한 청구에서 재판의 경우는 판결액이 1억원을 넘는 등 그 액수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조정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아 신청인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 ③ 언론보도로 인한 조정신청이 간단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 재판과 비교해 빠른 피해구제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 ④ 언론중재부의 조정이 인간적 화해로 이루어져 마무리가 깔끔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⑤ 조정에 의한 피해배상 액수가 낮아 언론사가 인격권 침해를 남용할 우려를 가지고 있다.
- ⑥ 언론사에 대한 피해액 청구가 낮아, 자칫 법원 소송으로 언론자유를 위축시키고 언론사에 지나친 부담을 가져오는 단점을 해소할 수 있다.

법원이 피해배상액수를 높이는 이유는 법원 외에는 언론홍포를 견제할 기관이 없다는 의식이 작용하고 있는데다 피해자의 권리의식 제고와 언론사의 경제적 규모 증가 등이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조계는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는 원상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언론사에 경각심을 주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자료를 고액으로 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듯 하다.

반면 언론중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정액이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중재위원회 구성 자체가 법조인과 경륜을 가진 언론인, 학계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언론사에 타격을 가하지 않는 액수를 산정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둘째, 언론중재제도가 어차피 임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인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어서 고액의 조정을 지양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향후 추세가 손해배상이 포함된 조정신청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여하에 따라 현재 60% 수준인 피해구제율의 진폭이 커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4. 결 론

언론중재제도의 출발은 언론의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언론기본법을 바탕으로 하긴 했지만 민주화 사회가 된 현재는 언론 소비자를 위해서 신속하고 즉효적인 결론을 내리는 제도로서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게 되었다. 우리가 문화산업에서 한류를 운위(云謂)하고 있는 것은 한국 문화예술과 관련된 콘텐츠의 다양성과 확산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언론중재제도 역시 외국에 확산될 수 있는, 언론소비자를 위한 '한류'가 되느냐 마느냐는 결국 활발한 운용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끊임없이 수정해가야 하겠지만 성공의 지름길은 다양한 사례의 분석과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한 이용도와 피해구제율 증가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여러 분석에서 보았듯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합의되는 손해배상 금액은 재판 결과와 비교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중재 및 조정과정에서 손해배상 액수를 융통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손해배상 수준이 높아져서 결과적으로 언론이 자유로운 보도에서 위축된다면 이 또한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언론의 위축은 곧 소비자의 피해로 되돌아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손해배상 산정 기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언론중재제도는 여러 가지 긍정적 면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피해구제율의 증가이다. 초창기 피해구제율이 40%대였던 것과 비교하여 지난 10년간의 통계를 보면, 반론보도 청구에서 조정성립률은 평균 39.3%이고, 실질적인 피해구제율(형식적으로는 취하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합의에 따른 취하의 경우